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57호의18서식] <신설 2026. 10. 1.>

부장검사	차장검사	공소청장 (지청장)
전결		

부치지청은 차장검사 부분 삭제하고, 단독지청은 지청장만 표기하여 사용

형사조정회부서

사 건 번 호		
피 의 자 (피 고 소 인)		[] 신청 [] 직권
피 해 자 (고 소 인)		[] 신청 [] 직권
죄 명		
	유형	[] 재산 [] 폭력 [] 명예 [] 교통 [] 지적재산권 [] 의료 [] 노동 [] 소년·학교 [] 여성·가정 [] 외국인·다문화 [] 기타()
사 건 개 요		
검 사 의 견		1. 조정 성립 시 예상 처분 [] 공소권 없음 • 친고죄[1] - 고소취소 () • 반의사불벌죄[2] - 처벌불원의사표시 () • 기타 () [] 각하 [] 양형자료 참작 [] 기타 () 2. 조정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참고사항(※ 별지 사용 가능)
조 정 기 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(개월)

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하오니 형사조정 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공소청 검사 ㊞

00지방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

※ 첨부: 위 사건 송치결정서

1)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,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(예: 모욕죄, 사자명예훼손죄, 업무상비밀누설죄, 친족 간 재산범죄 등)

2)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(예: 폭행죄, 협박죄, 명예훼손죄 등)